

「2024년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」 사업 모집공고

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내 가구기업을 발굴, 제품개발 및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중견·강소기업 도약을 목적으로 「2024년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」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경기도내 가구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2024. 2

(재)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
1 지원사업 개요

■ 사업개요

- 사업명 : 「2024년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」
- 사업기간 : 선정통보일 ~ '24.10.13일 (결과보고서 제출은 '24.10.23限)
- 지원내용 : 제품개발 및 마케팅 등 신청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화비용 직접 지원 (VAT 제외한 총 소요비용의 50~70% 이내)

○ 지원금액

분야	제품개발지원			마케팅			
과제	금형	목업	디자인개발	카탈로그	동영상제작	매체광고	온라인상거래
지원금 限度	제품개발 : 30백만원限, 마케팅분야 20백만원限 (총소요비용 5백만원 이상, 1개분야내 최대 2개과제)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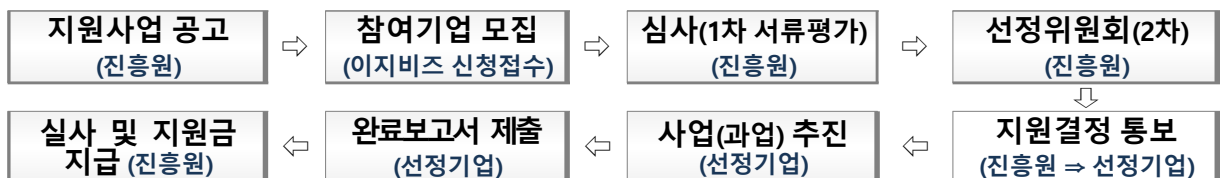
☞ 매출액은 2022년도 재무제표(손익계산서) 기준임

- 지원대상 :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가구제조기업(사업자등록증상)
(※ 영업사무소, 연구소만 위치한 경우 제외)

○ 신청 제외대상

-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인 기업,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
-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등 경기도 법위반 기업(아래참고)
-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
(ex. 홈페이지제작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상 홈페이지제작이나 소프트웨어개발 업종 해당)

■ 추진절차 (※ 참여기업에서 과제수행 후 지원금 지급)



※ 2차 평가는 대면발표 평가로 1차 서류 평가 후 개별 안내, 상황에 따라 원격 발표로 진행할 수 있음

■ 모집기간 : '24. 02. 23.(금) ~ '24. 03. 19.(화) 18:00 限

○ 온라인 이지비즈시스템(www.egbiz.or.kr) 신청 . 접수 (온라인접수에 한함)

■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○ 신청방법

① [회원가입(로그인) 및 서류등록] 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(www.egbiz.or.kr) 시스템
①기업회원 가입·로그인 ⇨ (상단) ②마이페이지 클릭 ⇨ ③나의 서류함 클릭 ⇨ ④지원
사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(증빙서류·인증서 등) 확인 후 '문서등록하기' 클릭 ⇨ ⑤
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

※ 나의 문서함에 지원사업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최초 등록하면, 향후 he지원사업에도 편리하게 활용 가능

② [사업신청] '이지비즈' 초기화면 ⇨ ①사업명 "2024년도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
지원" 선택 ⇨ ②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⇨ ③신청서 작성(기업정보 자동 생성) ⇨ ④구비
서류 업로드 ⇨ ⑤접수완료

⇒ 신청 후 「마이페이지」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가능하며, 임시저장 or 접수
완료 된 신청서는 해당 접수기간 內 수정 가능

○ 구비서류 (※ ①~⑥은 필수(제출)서류이며, ⑦~⑧은 해당 時에만 제출)

①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(진흥원 지정양식) 각 1부

② 사업자등록증 1부 ('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)

☞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증명도 제출

③ 공장등록증 1부 ('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)

☞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
"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"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, 건축물대장상
사업장 면적이 500㎡미만(종업원 50인 미만)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1)제1층, 제2층 근린생활시
설로 제조업 영위인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제출(단, 이 경우 공장보유 점수는 미인정함)

④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('21년도, '22년도)

※ 국세청 홈텍스 출력분 또는 세무사 확인분에 한함.

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(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)

⑥ 최종견적서·비교견적서 각 1부 (세부사업 소요비용 산정용)

☞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복수견적서를 받아 최저금액으로 사업비를 산출할 것

⑦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및 여부확인서 각1부

⑧ 각종 인증서 (해당 시에 한하며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, 평가시 가점부여)

(G-STAR기업, 경기도유망중소기업, 벤처기업, 일자리우수기업, 이노비즈, 수출유망중소기업,
사회적기업, 여성기업,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, 장애인고용 우수기업, 장애인기업, 녹색제품기업,
중증장애인가기업, KS, ISO, 환경표지인증, 단체표준, BIFMA, 산업단지RE100 참여기업)

⑨ 카탈로그(제품홍보를 위해 제작된 카탈로그) 1부

☞ 카탈로그 제작 신청기업의 경우 이전 카탈로그 보유 시 제출 必

※ 위 첨부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한개 파일(PDF)로 통합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필수 첨부서류 누락 時 평가에서 제외됩니다.

■ 문의처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디지털제조혁신팀 (☎ 031-850-3639)

2

세부(단위) 사업별 지원내용

분야	사업명	지원항목/세부사항	지원한도 및 금액	
제품개발 분야	금형 제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항목 : 금형 및 시제품 제작비 지원 • 세부사항 :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설계비, 가공비, 재료비 등 ※ 금형 외부에 경기도 가구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표기 <지원제외대상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판매를 위해 제작된 완성품, 자체 제작한 금형 · 설계도면 및 견적서 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등 	제품개발 분야 최대 30백만원 마케팅 분야 최대 20백만원	
	목업 제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항목 : 워킹목업 제작비 지원 • 세부사항 :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설계비, 가공비, 재료비 등 ※ 목업 외부에 경기도 가구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표기 <지원제외대상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판매를 위해 제작된 완성품, 자체 제작한 목업 		
	융복합 디자인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항목 : 차세대 가구 디자인(IoT 융합, 친환경 등) 개발 • 세부사항 :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설계비, 가공비, 재료비 등 ※ 시제품 등에 경기도 가구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표기 <지원제외대상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디자인 판매를 위해 제작된 완성품, 자체 제작한 시제품 · 디자인 전문기관, 기술보유 기업 등 컨소시엄이 아닌 경우 		
마케팅 분야	국내 매체 홍보	카탈로그 제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항목 : 기업 및 제품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• 세부사항 : 국문, 외국어, 국문·외국어 혼용 카탈로그 제작 ※ 카탈로그에 경기도 가구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표기 <지원제외대상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품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기업홍보물인 경우 	총비용의 50~70% 이내 총소요비용 5백만원 이상, 선택한 1분야내 2개과제 지원가능
		동영상 제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항목 : 홍보 동영상 제작비 지원 • 세부사항 : 기업 및 제품 홍보용 동영상 제작 <지원제외대상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동영상 제작이 목적이 아닌 인터넷 사이트 보완 및 기능 전환위주로 제작하는 Web 콘텐츠인 경우 등 	
		매체 광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항목 :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매체광고비 지원 • 세부사항 : TV·라디오 등 방송매체, 가구전문 잡지·신문, 포털사이트 등 광고비용 <지원제외대상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구전문 잡지·신문이 정기발행분이 아닌 경우 등 	
	온라인 상거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항목 : 온라인쇼핑몰, 홈페이지 구축비 지원 • 세부사항 : 웹 홈페이지 / 모바일 홈페이지 등 <지원제외대상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홈페이지 구축(보수) 전·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· 신청기업에서 자체 제작하는 경우 · 웹 호스팅 비용(서버, 도메인, 인터넷 사용료) 등 		

3

사업참여 유의사항

① 신청時 유의사항

- ① 세부사업 신청은 최대 1개 분야內 2개 사업(과제)으로 제한함
 - 총소요비용은 500만원 이상, 1개 분야內 최대 2개 사업(과제)으로 신청 가능함
- ② 사업 참여時 자부담 있으며, 부가세는 참여기업 부담임
 - 전체 소요비용 중 지원금 이외에 자부담이 있으며, 부가세는 전체 기업부담임
- ③ 제출서류검토時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(선정 탈락)
 -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는 온라인(이지비즈)에 한함
- ④ 선정안내 등 모든 내용은 이메일로 통보하므로 정확한 메일주소 기재 요망

② 선정기업 유의사항

- ①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‘사업설명회’를 개최할 예정이며, 사업담당자는 반드시 참석 요망 (일정은 별도 통보)
- ②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時 변경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하며, 미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(지원금 지급불가)
- ③ 사업 중도포기 시 향후 지원사업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 -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사업 진행시 사업비 부족, 대행업체 문제 등의 단순 사유로 중도 포기가 발생할 경우(천재지변 등 중대 사유 제외)
- ④ 정산 및 지원금 지급
 - 결과보고서는 과제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.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며, 지출 적정성 확인 후 선정기업 지정계좌에 입금함
 -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소요비용을 대행업체에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,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함 (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 불가함)
 - 제출서류 : 지원금지급신청서(결과보고)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
 - 지출증빙 :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
- ⑤ 他 기관을 통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
 - 경기도 및 중앙정부, 다른 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동일과제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, 사후 적발시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재대상으로서 既지원된 지원금 환수 및 법적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음

4

제재규정 및 클린신고 안내

① 경기도 법 위반기업 제재규정

경기도 법 위반기업 제재규정

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법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지원사업 선정 후에도 법위반기업 조회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.

- 위반사실 적용법률 :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분야 11개 법률
 - 1) (공정) ❶ 공정거래법, ❷ 하도급법, ❸ 표시광고법
→ 확인 :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에서 “법위반사실확인서” 발급 후 제출
 - 2) (노동) ❹ 근로기준법, ❺ 산업안전보건법
→ 확인 : 관할 지방노동청 확인
 - 3) (환경) ❻ 폐기물관리법, ❼ 대기환경보전법, ❽ 소음진동관리법, ❾ 물환경보전법
→ 확인 : 관할 시·군 등 관련기관에 위반사실 조회
 - 4) (납세) ❿ 국세기본법, ⓫ 지방세기본법
→ 확인 :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

② 부정당업체 제재규정

부정당업체 제재규정

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제과학진흥원 「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」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.

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-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)
- 지원배제(경제과학진흥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)

③ 클린민원 신고 안내

클린민원신고 안내문

지원사업 담당자가 금품·향응을 요구하거나, 부당하게 접수 불가, 반려 처리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때에는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부조리 신고창구 : 경제과학진흥원 감사실 031-259-6251~2
- 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(www.gbsa.or.kr) → 클린신고하기

평가내용		배점	특점	평가기준					
			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
대항목	세부항목								
기업 현황 (40)	소재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기도 내 본사 & 공장 (20점) 경기도 내 본사 or 공장 (10점) 	20		※ 경기도 소재 기업 우대				
	기업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구제조업 기업규모 기준 (22년도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) 	20		20점	16점	14점	4점	2점
재무 현황 (30)	매출액 증가율 (성장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식=[(2022년 매출 - 2021년 매출액) / 직전년 매출] × 100 - 기준년도('22년) 중소가구제조업 평균 : 0.45% 	10		10점	8점	6점	4점	2점
	매출액 영업이익율 (수익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식=(영업이익/매출액) × 100 - 기준년도('22년) 중소가구제조업 평균 : 1.77% 	10		10점	8점	6점	4점	2점
	부채비율 (안정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식=(부채총계/자본총계) × 100 - 기준년도('22년) 중소가구제조업 평균 : 174.37% 	10		10점	8점	6점	4점	2점
지원 현황 (30)	가구지원 수혜이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규 업체 우대 ※ 대상기간 : 최근 3년('21~'23년) 	20		20점	15점	10점	2점	
	사업비 자부담률 (신청액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 사업비 중 해당기업 자부담 비율 산식=(자부담금/총사업비) × 100 	10		10점	8점	6점	4점	2점
가점 (10)	인증획득 (건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G-STAR기업, ②경기도유망중소기업, ③벤처기업, ④일자리우수기업, ⑤이노비즈, ⑥수출유망중소기업, ⑦사회적기업, ⑧여성기업, ⑨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, ⑩장애인고용 우수기업, ⑪장애인기업, ⑫녹색제품기업, ⑬중증장애인기업, ⑭KS, ⑮ISO, ⑯BIFMA, ⑰환경표지인증, ⑱단체표준, ⑲산업단지RE100 참여기업 	10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개 이상 : 10점 3개 : 9점 2개 : 6점 1개 : 3점 해당 없음 : 0점 				
평가점수 합계			110						

※ (참고) 재무평가 기준 : 2022년 기업경영분석(한국은행, '23.12월 발행, 가구중소제조업체 기준)